

# 법률비용보험에 관한 연구

- 독일 법률비용보험 주식회사(D.A.S. AG)를 중심으로 -

유 주 선\*

<차례>

- |                 |                     |
|-----------------|---------------------|
| I. 서론           | V. 독일 법률비용보험의 법률체계  |
| II. 법률비용보험의 의의  | VI. DAS 법률비용보험 약관내용 |
| III. 법률비용보험의 특징 | VII. 결론             |
| IV. 법률비용보험의 구조  |                     |

주제어: 법률비용보험, 독일 보험계약법, 법률적 지원, 법률비용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계약 당사자의 합의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혼자 참거나 민원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홀로 제기하는 소송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소송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비전문가인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 보다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찍이 주요 선진국은 보험, 즉 법률비용보험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모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즉 법원비용이라든가 변호사비용 등을 보험회사가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보험인 법률비용보험을 통하여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 시장을 통한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법률비용보험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의, 특징 및 법적 구조를 연구하고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대표적인 법률비용회사인 Deutscher Automobile Schutz AG(이하 'DAS')의 법률비용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법정화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와 유사한 면을 보여주지만,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4.11.30), 심사개시일(2014.12.6), 게재확정일(2014.12.20.)

법률비용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가 단일한 보험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계 회사인 DAS사가 독일식의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바, 그것의 발전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률비용보험의 발전과 함께, 독일에서는 약관에 의존하던 일부의 방식을 탈피하여 보험계약법에 명문으로 법률비용보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입법론의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I. 서론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 법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혼자 참거나 민원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홀로 제기하는 소송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약 80%가 홀로 소송에 해당한다고 한다. 소송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비전문가인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 보다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사람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법률에 호소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자든 부유하지 않은 자든 모두 법률에 호소함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경우에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법치주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송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일찍이 주요 선진국은 권리구제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 실현으로서 보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2)</sup>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비

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DAS 회사가 '법률비용약관'이라는 명칭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률비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용보험은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sup>3)</sup> 본 논문은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연구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등 여러 나라를 고찰할 수 있지만, 독일의 대표적인 법률비용회사인 Deutscher Automobile Schutz AG(이하 'DAS'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의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II. 법률비용보험의 의의

### 1. 개념

법률비용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에 속한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 법률비용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소송당사자로서 법적 이익에 대한 수혜를 받는 입장에 있다.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모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즉 법원비용이라든가 변호사비용 등을 보험회사가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보험이 법률비용보험이다.<sup>4)</sup> 이를 다른 말로 법무보험, 권리보호보험 또는 법률서비스보험이라고도 한다.<sup>5)</sup>

### 2. 실례

법률비용보험은 임대차 분쟁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sup>6)</sup> 갑이 임차인이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그 분쟁을 해

2) 우리나라의 법률비용보험을 독일에 소개한 자료로는 Choi, Byeong-Gyu, Rechtsschutzversicherung in Südkorea,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1, 419면 이하; Kim, Eun Kyung, Die Stellung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in der schadenversicherung, 「경영법률」 제22집 제1호, 2011, 329면 이하.

3) Deutsch, Das neue Versicherungsvertragsrecht, 6. Aufl., 2007, S. 202.

4)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8면 이하.

5) 장재욱, "법률서비스보험 연구-독일에서의 권리보호보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164면.

6)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378면 이하.

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법률적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법률비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분쟁해소를 위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적 비용에 대하여는 고민이 없게 된다. 그러나 법률비용보험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 사례의 발생도 언제나 가능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와 관리비 지급지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률비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법률비용보험에 의한 변호사를 통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다.

### 3. 기능

#### (1) 법적 분쟁 해결

법률비용보험은 권리의 수혜를 받는 피보험자가 소송당사자가 된다. 피보험자인 소송당사자는 자신의 법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존재하거나 그 소송이 무모하지 않으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비용보험은 의미를 갖게 된다.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람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그는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된다. 건강보험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고나 손상에 발생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계약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병원을 찾게 된다. 신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라고 하겠다. 육체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가 건강보험이라면, 법률비용보험은 적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국민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sup>7)</sup>

7) 권영수,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대책", 「조사연구 Review」 제19호, 2005, 금융감독원, 3면 이하.

## (2) 기본권 보장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헌법의 취지와 달리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법률비용보험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일정한 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경우 합당한 법률서비스와 비용의 혜택을 보험자로부터 받게 된다.<sup>8)</sup>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법률 상담비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모든 법률비용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비용보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의 제도라고 하겠다. 사회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각종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비용보험제도는 법적 분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하겠다.

## 4. 유형

### (1) 단체형과 선불형

법률비용보험은 이용료 지불방식에 따라 단체형(Group Legal Plan)과 선불형(Prepaid Legal Plan)으로 구분된다.<sup>9)</sup> 단체형은 단체구성원이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법률 전화상담을 하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다. 반면, 선불형은 사전에 비용을 지급하고 급부를 제공받는 형식이다. 선불형은 비용과 급부방식에 따라 상담제공형, 포괄제공형, 사업자형으로 나누어진다.<sup>10)</sup> 상담제공형은 법률조언이나 예방적인 법률서비스

8)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2008, 8, 107면 이하.

9) 권영수,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대책", 「조사연구 Review」 제19호, 2007년 3월, 10면.

10) 장재욱, "미국에서의 소송비용부담과 법률서비스 보험", 「법학논문집」 제23권 제2호 중앙대학교법

를 제공받음으로써 변호사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포괄제공형은 상담제공형의 서비스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사업자형은 중소기업 소유자나 임원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설립, 상사관련 계약, 채권청구를 위한 기안, 특허 및 저작권, 제조물이나 서비스 관련 분쟁, 파산 등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2) 공제형과 영리형

법률비용보험은 유럽에서 발전한 형태와 미국에서 발전한 형태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초기 유럽의 경우 중세 유럽의 길드에서 조합원의 법률문제를 상호 부조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률비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되는데,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공제사항의 내용을 하고 있는 미국의 공제형과 법률서비스를 보험급부로 하는 보험상품의 하나로 제공하고 한 프랑스의 영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11)</sup>

### (3) 폐쇄형과 개방형

공제형 법률비용보험은 폐쇄형 법률비용보험과 개방형 법률비용보험으로 분류된다.<sup>12)</sup> 전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공제기관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여 조합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후자는 공제기관이 외부조직인 변호사 단체와 제휴하여 법률서비스 조직을 설립하고 그 조직의 운영자금을 사업자 측의 출연과 노동조합의 조합비에서 징수하여 마련한 다음에,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항목별 지급기준에 따른 비용을 그 기금에서 지급하는 형태이다.

학연연구소, 1999, 76면.

11) 오수근, “법무비용보험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36면.

12) 지수현, “법률비용보험의 개황과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지』 통권 제396호, 2001. 11, 20면.

### Ⅲ. 법률비용보험의 특징

#### 1. 손해보험

법률비용보험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무보험자, 법무서비스기관이다. 특히 법률서비스 이용자와 운용자가 중요하다. 전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등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구매하는 직접 이용자이다. 후자는 보험자를 의미한다. 법률비용보험자는 영리보험자와 비영리보험자로 구분된다. 적극보험인 손해보험종목인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보호비용을 보상하는 자가 영리보험자라고 한다면, 이용자인 피보험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비용을 보상하는 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대규모 공제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사회보장

법률비용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입각하여 위험과 비용의 분산을 통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법률전문가의 서비스나 법원에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여,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기도 한다. 책임보험이 손해보험이면서 소극보험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같은 손해보험에 속하는 법률비용보험은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보험에 속한다.<sup>13)</sup> 국민들의 법률상담이나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보험으로 부보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비용, 송달료 등 소송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필요하고도 충분한, 또한 정상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비용보험은 공익적이면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14)</sup>

13)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11면.

14) 이상돈,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4권 제1호, 2002, 139면.

### 3. 적극보험

재산보험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 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보험을 적극보험이라고 한다. 반면, 소극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생긴 일정한 손해나 비용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sup>15)</sup> 후자의 대표적인 보험은 책임보험을 들 수 있다. 책임보험 역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에 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점에서 법률비용보험이나 책임보험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법률비용보험은 보험자로부터 법률상담이나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비용보험은 손해보험이면서 적극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IV. 법률비용보험의 구조

### 1. 보험계약당사자

법률비용보험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무보험자, 법무서비스기관이다. 특히 법률비용보험 이용자와 운용자가 중요하다. 전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등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직접 이용자이다. 후자는 보험자를 의미한다. 법률비용보험자는 영리보험자와 비영리보험자로 구분된다. 적극보험인 손해보험종목인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보호비용을 보상하는 자가 영리보험자라고 한다면, 이용자인 피보험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비용을 보상하는 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대규모 공제회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 2. 보험목적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사고발생의 객체로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15)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33면 이하.

자의 재화가 되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되는 것이다.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의 목적이다.<sup>16)</sup> 법률비용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 법률비용비용이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의 수를 포함한 사법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률비용보험의 보험목적은 충분한 자력이 있는 부유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중산층의 권리보호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3.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은 상법전에서 ‘보험계약의 목적’과 유사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의 대상(자동차라든가 주택 등)이 보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피보험이익은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말한다. 즉, 일정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한다.<sup>17)</sup> 법률비용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주로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여러 가지 유형이 발견된다.<sup>18)</sup> 토지, 건물이나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권리하자나 계약위반에 근거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불법행위 권리보호, 법률적인 청구권의 서비스 공급에 관한 공공서비스조건의 노동조건과 법적 이익의 확인을 위한 노동 권리보호, 임대 및 임대 계약, 기타 실제 권리와 공정한 사용, 토지, 건물 또는 대상 건물의 일부에서 법적 이익의 확인을 위한 주택 및 부동산 권리보호 등이 등장할 수 있다.<sup>19)</sup> 그 외 사법상 의무와 권리의

16)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박영사 제8판, 2008, 68면.

17)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2, 384면.

18) 권호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17면.

19)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2008, 8, 106면.

법적 이익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과 재산법상의 권리보호, 사회법상 권리보호, 행정 당국과 행정법원에서 교통문제에 관한 법률적 이익의 확인을 위한 교통문제 행정법적 권리보호, 징계 신분상의 권리보호, 기소에 대한 방어를 위한 형사상의 권리보호 및 질서위반사건의 권리보호 등 역시 법률비용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 5. 보험금부

보험금부의 내용은 보험자가 법률서비스 바로 그 자체만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급부하는 것이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sup>20)</sup> 국민이 일정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거소에 인접해 있는 법률사무소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당해 사건에 대해 선임의뢰를 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다.<sup>21)</sup>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민사, 형사, 행정 및 가사사건 등의 소송업무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법률문서작성, 공증업무, 중재·조정업무, 재판외 화해업무, 세무사업무, 변리사업무, 등기업무, 재판외 행정사건 처리업무, 조사업무 등의 필요비용이 해당된다. 실질적인 보험금부가 중요하다. 급부수준은 적은 비용으로도 소송당사자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상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V. 독일 법률비용보험의 법률체계

### 1. 보험감독법

#### (1) 조직형태

독일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은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

20) 권호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18면.

21)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2008, 8, 107면.

하고 있다. 감독법상 법률비용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업에 대한 허가사항부터 인식해야 한다. 독일 보험감독법은 보험사업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보험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형태를 제한하고 있다. 유럽주식회사, 상호회사 공법상의 단체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 형태만이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sup>22)</sup> 그렇지 않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업계획으로부터 다른 사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영업에 대한 허가는 지체 없이 통보된다. 영업허가는 각각의 보험종류에 대하여 분리하여 통보하고 있다. 법률비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허가는 보험감독법을 통하여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영업허가

독일 보험감독법은 제8a조는 법률비용보험 영업행위에 대한 행사(Ausübung der Geschäftstätigkeit)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손해감정법인(Schadensabwicklungsunternehmen)의 역할이다. 손해감정법인에 대한 사항은 독일 보험계약법제 제126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동 법인은 영업행위 뿐 아니라 보험급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률비용보험만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독일의 경우 법률비용보험과 더불어 다른 영역의 보험에 대한 운영도 가능하다. 보험감독법 제8a조나 보험계약법 제126조는 보험자가 법률비용보험 외에 다른 보험종목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sup>23)</sup> 다른 종류의 보험과 함께 법률비용보험을 영업으로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유럽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그 밖의 다른 자본회사의 형태로 급부업무를 양도할 수 있다. 손해감정법인의 경우 업무집행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률비용보험 외에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동시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나 종사자는 손해감정법인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두 이익충돌에 대한 예방을 위한 장치라고 하겠다.

22) 독일 보험감독법 제7조는 보험회사로서 허용되는 법적 형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3) Langheid/Wandt/Richter, VVG § 126 Rdn. 1 C.H.Beck, 2012.

## 2. 보험계약법

### (1) 체계

1908년에 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은 당시에는 권리보호보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1987년 6월 22일 유럽연합에서 권리보호보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독일은 1990년 7월 1일 보험계약법 개정을 통하여 권리보호보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sup>24)</sup> 구 보험계약법 제158 1조에서부터 제159 0조에 규정되어 있던 권리보호보험은, 독일 보험계약법상 손해보험의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권리보호보험은 독립적인 보험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보호보험의 본질이 손해보험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독일 보험계약법은 권리보호보험에 대하여 5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다.<sup>25)</sup> 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sup>26)</sup> 제126조는 손해감정회사(또는 손해사정기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sup>27)</sup> 제127조는 변호사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sup>28)</sup> 제128조는 전문가소송(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고,<sup>29)</sup> 제129조는 양 당사자

24) 김은경,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4호, 한국 법제연구원, 2013, 315면 이하.

25) 독일 보험계약법 제125조 내지 제129조는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Langheid Theo/Wandt Manfre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De Gruyter Recht·Berlin, 9. Aufl., 2009; Looschelders Dirk/Pohlmann Petra,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arl Heymanns Verlag, 2010; Prölss Jürge/Martin Anto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ommentar zu VVG und EGVVG sowie Kommentierung wichtiger Versicherungsbeding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ÖVVG und österreichischer Rechtsprechung, 28. Aufl., Verlag C.H.Beck, 2010. 규정번역에 대하여는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VVG)」, 세창출판사 2008, 58면 이하 참조.

26) § 125 (보험자의 급부) 권리보호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법적 이익행사에 대한 필요한 급부를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

27) § 126 (손해감정회사) (1) 권리보호보험 영역으로부터의 위험이 다른 위험과 더불어 부분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권리보호보험의 보상범위 및 이를 위한 보험료를 별도로 알려야 한다. 보험자가 급부처리에 대해 독립된 손해사정회사(감정인)에게 위탁할 경우 그 손해사정회사를 보험증권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급부처리에 대해 독립된 손해사정회사에게 위탁된 경우에 권리보호보험계약으로부터의 보험급부청구권은 손해사정회사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권리보호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27조를 준용한다.

28) § 127 (자유로운 변호사 선임) (1) 보험계약자는 법정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사 직능별(또는 영역별) 단체로부터, 변호사를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의 보수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담한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법적 이익을 기타 방법으로 관철하기 위한 권리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2000년 3월 9일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가 약관을 통하여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sup>30)</sup> 다만, 권리보호보험의 영역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불이익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계약법 제129조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합의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26조 내지 제128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규정은 편면적(상대적)강행규정이다. 원칙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자 등을 유리하게 하는 면이 가능하고, 보험자 등을 불리하게 하는 면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2) 핵심내용

독일은 2007년 보험계약법을 개편할 때에 법률비용보험(이를 독일 원어로 풀이한다면 권리보호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이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에 대한 5개 규정을 신설하였다. 우선 법률비용보험의 보험자의 급부로서 법률비용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법적 이익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25조). 독일 보험계약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급부처리에 대해 독립된 손해정산회사에게 위탁할 경우 그 손해정산회사를 보험증권에 표기하여야 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26조 제2항 제1문에 의해 급부처리에 대해 독립된 손해정산회사가 위탁된 경우에 법률비용보험계약으로부터의 보험급부청구권은 바로 그 손해정산회사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법률비용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법정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자신의 이

---

활동에 관한 법률(최근 개정: 2003년 10월 26일[BGBI. I S. 2074]) 제1조에 대한 부록에 따라 직업적으로 활동할 권한이 있는 자도 변호사로 본다.

29) §128 (전문가소송평가절차) 법적 이익의 주장이 성공여부에 관한 충분한 가능성이 없거나 경솔하다고 하여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거절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감정절차나 법적절차의 성공가능성이나 부당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를 판단할, 공정성이 보장되는 다른 절차를 예견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자는 자신의 급부를 거절할 때 이러한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그러한 절차를 예견하고 있지 않거나 보험자가 그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경우 개별사례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 것으로 본다.

30) §129 (합의가능성) 제129조 (다른 합의) 제126조 내지 제128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익을 대변할 변호사를 자유로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보수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담한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법적 이익을 기타 방법으로 관철하기 위한 권리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28조에서는 법적 이익의 주장에 대해 보험자가 성공의 충분한 가능성이 없거나 악의적인 태만이 있다고 하여 급부의무를 거절하는 경우 전문적 감정절차나 법적절차의 성공가능성이나 부당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를 판단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다른 절차를 보험계약에서는 예견하고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는 자신의 급부를 거절할 때 이러한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독일 보험계약법은 동 제129조에서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법률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보험계약법에서 법률비용보험의 급부내용, 변호사 선임의 자유, 전문가감정절차, 편면적 강행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적 태도는 법률비용보험에서의 핵심적 내용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관계자들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VI. DAS 법률비용보험 약관내용

### 1. 급부형태의 다양성

DAS 법률비용보험은 각각의 피보험자가 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급부구조를 가지고 있다.<sup>31)</sup> 우선, '일반적 보험계약자'와 '사업을 운영하는 보험계약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생활용 부동산', '임대인 생활용 부동산', '일상생활도로교통', '가족생활', '법률상담' 등의 개별적인 상품별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생활용 부동산', '일상생활 도로교통' 및 '가족생활'을 하나로 묶어 '홈 리걸 케어'라는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포괄적인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구성원 1~3명, 4~6

31)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DAS 법률비용주식회사 제공한 보험약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명, 7~10명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차이를 보이게 된다.

## 2. 생활용부동산 권리보호

피보험자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주거를 목적으로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던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물, 주택에 부속된 토지와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①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② 계약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상 분쟁
- ③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단, 세무 상담은 제외)
- ④ 행정 권리보호: 행정 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 ⑤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 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 ⑥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생활용 부동산 권리보호 특별약관에는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생활용부동산 임대인 권리보호

피보험자가 소유자로서 직접 주거하지 않고 임대한 아파트, 빌라, 연립 등 다세대 주택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아래 각 호의 행위들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 ①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② 계약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상 분쟁
- ③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단, 세무 상담은 제외)
- ④ 행정 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 ⑤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 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 ⑥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생활용부동산 임대인 권리보호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사업용 부동산 권리보호

피보험자가 생계를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소유, 사용, 관리하는 토지, 주택, 건물 및 그 부속물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아래 각호의 행위들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①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② 계약 권리보호: 사업적 필요에 의한 계약상 분쟁
- ③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 ④ 행정 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 ⑤ 이웃 권리보호: 토지 또는 재산 관련 권리의 이유로 직접 인접한 이웃 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
- ⑥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사업용 부동산 권리보호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가족생활 권리보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행위들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법적 다툼으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①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②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 및 소유권 분쟁
- ③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 ④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 ⑤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단, 세무관련 법률 상담은 제외)
- ⑥ 행정 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 ⑦ 학교 권리보호: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및 대학의 관리 주체와의 분쟁
- ⑧ 피해자 권리보호: 형사 폭력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⑨ 노동법 권리보호: 고용계약에 관한 분쟁
- ⑩ 공무원 및 전문 직업인의 복무규정 권리보호: 공무원 및 전문직업인의 복무규정과 관련한 분쟁
- ⑪ 사회 권리보호: 사회보장 관련 분쟁
- ⑫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횟수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생활 권리보호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6. 일상생활 도로교통 권리보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통 승용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행위들에 있어서 의

도하지 않게 발생한 법적 다툼으로서 법률적인 조치, 조정 내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 ① 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② 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 및 소유권 분쟁
- ③ 형법 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 ④ 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 ⑤ 법원에서의 세금 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단, 세무관련 법률상 담은 제외)
- ⑥ 행정 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 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 ⑦ 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일상생활 도로교통 권리보호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VII. 결론

우리나라에서 법률비용보험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그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상품의 형식은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일계 보험회사인 DAS사의 “법률비용보험”이 단일한 상품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권리보호보험은 특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요국 법률비용보험을 두루 고찰하는 방법 대신에, 법률비용보험이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하고 있는바, 독일의 경우 법률비용보험이 가장 장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발전된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법률비용보험이 보험회사라고 하는 영리형태를 가지고 발전하게 된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가 법정화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와 유사한 면을 보여주지만, 법률비용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회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가 단일한 보험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계 회사인 DAS사가 독일식의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바, 그것의 발전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률비용보험의 발전과 함께, 독일은 약관에 의존하던 일부의 방식을 탈피하여 보험계약법에 명문으로 법률비용보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영수, “법률비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책,” 「조사연구 Review」 제19호, 2005, 금융감독원.
- 권효상, “법무보험에 관한 연구-법제운용과 정착가능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 김은경,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은경, Die Stellung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in der Schadenversicherung, 「경영법률」 제22집 제1호, 2011.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2.
- 신동호, “독일 D.A.S. 법률비용보험회사의 국내진출모델 연구(한국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비교),” 한독경상학회, 2009.
- 오수근, “미국의 법무보험,” 「법과사회」 8, 1993.
-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 이기수 · 최병규 · 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박영사 제8판, 2008.
- 이봉림, “법률비용보험의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2008, 8.
- 이상돈,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4권 제1호, 2002.
- 이필규 · 최병규 · 김은경, 「2009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 장재욱, “법률서비스보험 연구 -독일에서의 권리보호보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장재욱, “미국에서의 소송비용부담과 법률서비스보험,” 「법학논문집」 제23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최병규, Rechtsschutzversicherung in Südkorea,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1, 419면 이하,

- Deutsch Erwin, Das neue Versicherungsvertragsrecht, 6. Aufl., 2007.
- Langheid Theo/Wandt Manfre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De Gruyter Recht·Berlin, 9. Aufl., 2009.
- Looschelders Dirk/Pohlmann Petra,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arl Heymanns Verlag, 2010.
- Prölss Jürge/Martin Anto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ommentar zu VVG und EGVVG sowie Kommentierung wichtiger Versicherungsbeding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ÖVVG und österreichischer Rechtsprechung, 28. Aufl., Verlag C.H.Beck,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Insurance in  
Major Countries  
- especially in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

Ju-Seon, Yoo

Legal expenses insurance is a type of insurance.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protection insurance in Germany. The insurer is oblig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perform the legal interests o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performance in the agreed scope (§ 125 VVG). This rule describes the objective pursued by a legal expenses insurance business purpose and thus gives the ambiguous term "legal" contours. The decisive factor is the agreement in the AVB. In legal expenses insurance, these are the general conditions for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ARB), which call such costs as the main performance of the insurer in § 1 VVG. The separate documentation of performance in legal protection insurance from a treaty over several risks should clearly lead to the policyholder, the guarantee of legal protection in mind. The casualty, who also runs the Rechtsschutzversicherung is often exposed to conflicts of interest. This allows claims to insurance benefits under a contract for legal expenses insurance if an independent claims settlement company is beauftragt with the performance of processing shall be brought only against this. The policyholder is entitled to freely choose its representatives in gerichtliche- and Verwaltungsverfahren the lawyer who is wahrnehmen its interests in the circle of lawyers, wearing their compensation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In the event that the insurer denies his liability because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offer no reasonable prospect of success or was willfully, the insurance contract shall provide for a peer review or other

procedure offering comparable guarantee of impartiality in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o decide on the success or the wantonness of a prosecution.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is to be satisfied even with partially Able drying of coverage. This obligation does not apply if the policyholder knows his law already. The provisions of §§ 126 to 128 SG primarily serve to protect the policyholder. The generally weaker economic position of the policyholder at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protected. Through the study of the Law Insurance in Germany, I hope that the insurance contract area of legal insurance is to be developed in Korea.

**Key Words** : Legal expenses insuranc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Legal assistance, legal expenses insurer and policyholder, agreement of parties